

의안번호	2218683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6. 5. 21.
추 계 번 호	26B239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7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제1항) <단서 삭제>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해당 연도 고용 의무 불이행 사유서 및 다음 연도 고용 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 확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3항 신설)	재량규정
2	안 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신설	민간기업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4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이 부진한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민간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5조의3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미이 행부담금)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미이행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제3항)	의무규정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4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을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되,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 및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제5항)	의무규정
4	안 법률 제 11792호 청년 고용촉진 특별 법 일부개정법 률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2조)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제1항 (공공기관의 청 년 미취업자 고 용 의무)	×	• 미대상(제1항)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7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 하도록 상향조정하고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인한 의무 불 이행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임 － 개정안의 시행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이행 주체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이 규정되어 있고, 정원을 초과하여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 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 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대상(제2항)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고용촉진특별 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해당 연도 고용 의 무 불이행 사유서 및 다음 연도 고용 의무 이행계획서를 제 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기존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의 추가재정소요를 수 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미첨부(제3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 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본문 참조

- 1)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2	안 제5조의2 (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신설	—	• 미대상(제1항·제2항·제5항) － 개정안은 민간기업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 평가결과 고용실적이 부진한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고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민간기업의 청년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나,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주체가 민간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첨부(제3항 및 제4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본문 참조
3	안 제5조의3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미이행부담금) 신설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본문 참조
4	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	• 미대상 －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의무(이하 “청년고용의무제”)를 부과하고 있으며¹⁾, 청년고용의무제는 2023년 개정된 법률 제19940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임 － 다만,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이행 주체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이 규정되어 있고, 정원을 초과하여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상세 사유

- (안 제5조제3항)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 확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 확보 등의 지원 여부와 지원 내용과 이를 위한 사업의 요건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안 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 개정안은 민간기업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규모와 이에 대한 고용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지원요건·지원범위,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규모를 확정하여 산출하기 곤란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정부는 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민간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민간기업 명단의 산출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이 구체화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현시점에서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안 제5조의3)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미이행부담금(이하 “부담

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고용지원금 지급 및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안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 개정안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미이행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부담금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함
 - － 다만,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재정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겠으나, 수입의 증가는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²⁾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 (안 제5조의3제3항 및 제4항)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임
 - － 다만,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재정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겠으나, 수입의 증가는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 (안 제5조의3제5항)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담금과 가산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되, 이를 고용지원금의 지급 및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 다만,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겠으나, 재정 수입의 증가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음
 - － 또한,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지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 및 규모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와 범위,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시점에서 추계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2)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